

●문화재청공고 제2022-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의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世宗 世宗里 은행나무)

Ginkgo Tree of Sejong-ri, Sejong

3)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5 등

4) 주요현황

가) 수 종 : 은행나무

나) 수 령 : 600년(추정)

다) 규 모 : 2주

수고(m)	근원 둘레(m)	수관폭(m)
20m/19m	6.9m/5.4m	동-서 20.3m 남-북 20.9m / 동-서 13.5m 남-북14.3m

5) 문화재구역: 30필지 7,260.5㎡(지정구역 1,878㎡, 보호구역 5,382.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계			19,587	7,260.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2	도	337	55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29㎡ 보호구역 26㎡
	88-4	대	436	436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68㎡ 보호구역 368㎡
	88-5	대	278	278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88-11	대	221	221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6㎡ 보호구역 215㎡
	88-12	대	79	79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42㎡ 보호구역 37㎡
	88-13	대	132	132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88-14	대	324	324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217㎡ 보호구역 107㎡
	88-22	대	446	402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20㎡ 보호구역 382㎡
	88-23	대	192	192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184㎡ 보호구역 8㎡

108-1	대	541	541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352㎡ 보호구역 189㎡
108-2	대	106	106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108-3	대	487	487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9㎡ 보호구역 478㎡
109-1	전	555	555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254㎡ 보호구역 301㎡
109-2	도	344	178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79㎡ 보호구역 99㎡
760-1	도	1,336	181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102㎡ 보호구역 79㎡
87-5	대	270	10	한국토지공사	보호구역
88-7	대	823	84	한국토지공사	"
88-8	대	536	390	한국토지공사	"
88-9	대	298	295	한국토지공사	"
88-10	대	205	156	한국토지공사	"
88-15	대	337	159	한국토지공사	"
89-2	대	1,160	1,093	한국토지공사	"
107	대	982	42	한국토지공사	"
516-1	도	56	37	한국토지공사	"
517-1	도	7	5	한국토지공사	"
526-1	대	284	99	한국토지공사	"
526-2	도	549	0.5	한국토지공사	"
526-4	대	992	175	한국토지공사	"
755-36	천	5,191	516	한국토지공사	"
산89	임	2083	32	한국토지공사	"

나. 지정사유

- 고려말 충신 임난수 장군(1342~1407)의 사당(현 송모각) 앞에 심어진 은행나무로 부안임씨세보(1674년 간행)의 부조사우도에 은행나무 한 쌍과 행정(杏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충청도 공주목<公山誌(1859)>의 부조사우(不祧祠宇), 연기지<燕岐誌(1934)>에도 은행나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암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노거수로서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와는 차별성이 있고 유교 문화와 관련된 행단(杏壇)의 대칭형 식재 방식과 전월산 자락의 송모각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안임씨 후손들이 매년 은행나무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 등 학술·경관적 가치가 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44-300-5832 / 팩스 044-300-5819

가)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나)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 전자메일 : ez13307@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